

DEC 2020. Issue 146

ZOOM 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Where Is Grace Chang?**

03 ... Back to the Future

 **Cover Story**

06 ...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시대의 개막

 **FTA News**

11 ... 몽골, APTA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Inside Vietnam**

13 ... 베트남의 관세 위반행위 처벌규정 128/2020/ND-CP 시행

 **관세무역 관련 법령변경 소식**

16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세 관련 심판사례**

19 ... 수입항에서 발생한 체선료의 과세쟁점



장 승 희
대표 관세사

대설(大雪)은 큰 눈이 온다는 날이지요. 그러나 지난주의 하늘은 청명하고 영상의 포근한 날들이었습니다. 웬걸, 며칠 지나자 큰 눈이 내리고 기온도 영하 10 도까지 급강하 하였습니다. 옛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날들에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계절을 세분하여 24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가다듬고, 수확하기 위한 기준이 계절의 흐름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며칠 후 동지(冬至)가 되면 태양은 적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밤의 길이가 최고로 길어지고 흐르는 샘물까지 어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동지를 지나 소한(小寒), 대한(大寒)의 겨울이 되면 조상들은 휴지(休止)와 칩거(蟄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확을 마친 농부들은 휴식을 가지며 다음해를 준비하는 농한기(農閑期)를 보냈습니다.** 불과 50 여년전 일입니다.

긴긴 겨울방학이 오면 기차를 타고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갔습니다. 작은 시골역에서부터는 고개를 넘어 달음박질 쳐 갔습니다. 고향 친구들을 따라다니며 곱은 손으로 팥이를 돌리고 썰매를 탔습니다. 저녁밥은 먹는 등 마는 등 친구들과 동네 사랑방을 기웃거렸습니다. 새끼를 꼬며, 화투를 치며 놀고있는 마을 청년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군고구마와 이 시린 동치미, 막걸리까지 얻어먹으며 긴 겨울밤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이번 달 Cover Story 는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시대의 개막'입니다. FTA News 는 '몽골, APTA 7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며, 베트남 현지에서 알려드리는 Inside Vietnam 은 '베트남의 관세 위반행위 처벌규정 128/2020/ND-CP 시행'입니다. 또한 관세무역 관련 법령변경 소식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이며, 관세 관련 심판사례는 '수입항에서 발생한 체선료의 과세쟁점'입니다.

100 년, 아니 50 년후 우리의 아이들은 어린 시절 그들의 겨울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작은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고사리 손에 장갑을 끼고 부모 손을 잡고서만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반가운 친지를 만나도 달려가 안겨도 될 것인지 주저합니다. 마스크 쓴 얼굴들은 누구인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먹기 위해,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끝없이 몰아세우며 경쟁하며 달려온 날들**입니다. 쉼을 부끄러워하며 놀이를 주저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끌어올 수 있는 것을 닥닥 긁어 모으며 온 땅을 뒤집어 얹으며 달려왔습니다.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지난 2 월 코로나 19 로 중국의 산업활동이 멈추었습니다.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맑고 높은 파란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나마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25%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에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인류는 지구를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 세기 초반 **인간이 만든 물건들의 총 질량(the mass of human-created stuff)**은 전 지구에서 35 억톤이었습니다. 2020 년 올해에 1 조톤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30 억톤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급증, 오존층의 파괴, 표면기온 상승,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거대한 가속화(The Great Acceleration)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빙하기 이후 1 만년간 누리던 홀로세(Holocene)에서 인류세(Antropocene)가 생길 정도로 인간의 활동은 지구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인류라는 매우 강력한 생물종이 지구 환경 전체를 바꿔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급하고 절실한 행성적 위기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사태도 과도한 인류세(人類世)가 초래한 자업자득의 사태입니다. 깨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자연이 당연한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야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 사람들 같이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출구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다.(Tom Stoppard) 라고 합니다.

2020년을 나가면서 돌아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들을 덮을 수가 있을까요? 새롭게 들어가야 할 입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더 늦기 전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We make our own plans, but the LORD decides where we will go. (Proverb 16:9)

*Nationalgeographic, 2020,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environment/2020/12/human-made-materials-now-equal-weight-of-all-life-on-earth/>>

**최평순, 다큐프라임제작팀. 2020, 「인류세: 인간의 시대」. 해나무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hee Chang*



Cover Story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시대의 개막

스파게티 볼 효과의 의의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 및 각 국의 정상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하였다. RCEP은 작년 말 협상 테이블을 이탈한 인도를 제외하고,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 10개국, 호주·뉴질랜드 2개국을 포함한 총 15개국이 참여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 GDP의 1/3 규모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규모의 MEGA FTA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윤 영 수 관세사
ysyoon@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FTA 관련 자문
- 관세환급

RCEP이 서명 되었다는 뉴스를 접한 이튿날, 관세사들과 각 기업의 통상 담당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RCEP 협정문을 확인하기 위해 사방으로 탐문을 하였고, RCEP 서명국 중 한 국가에서 공개한 협정문은 삼시간에 퍼져나갔다. 이는 각 서명국의 RCEP 관세 양허여부 및 양허수준을 확인하고,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PSR)을 정립하고, 협력사들로부터 차년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할 때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터였다.

이러한 현장의 한 가운데에서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라는 용어가 불현듯 머릿속을 스쳤다. 이는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애초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을 의미한다.¹ 여러 FTA 각각의 원산지 규정을 스파게티 면으로 보고, 마치 접시 속에 담긴 스파게티 면들이 서로 복잡하게 엉켜있는 모습에 빗대어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 부른다.

스파게티 볼 효과의 발생 원인

하나의 상품에는 하나의 원산지 규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원산지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실례로, 협력사들이 발주사 앞으로 원산지포괄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2020년 기준 통상 16개의 FTA 협정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선행한다. 여기에 APTA 협정이나 대외무역법령 등에 따른 기타 특혜·비특혜 원산지 규정까지 더하면 하나의 상품에 얼마나 많은 원산지 규정이 얽혀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실무적인 문제는 각 국별, 각 국가 간 협정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다. 심지어는 같은 법령 또는 협정 내에서도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기준(PSR)이 상이하다. 결국 원산지 증명을 하려는 당사자와 원산지 증명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활용하고자 하는 원산지 규정과 각 개별 품목의 HS Code를 기준으로 원산지 규정을 각각 파악하고 원산지 판정을 수행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 스파게티 볼 효과이다.

¹ 시사경제용어사전

WTO에서도 난립된 원산지 규정의 비효율성을 인지하고, WTO 출범 직후 당초 3년을 시한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판정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다. 다만, 국가 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협상은 교착 상태에 있다. 2000년대 중반을 기하여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통일된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있는 것으로 보인다.

RCEP과 스파게티 볼 효과

단지 FTA가 하나 더 추가되었을 뿐인데, 스파게티 볼 효과를 운운하는 이유는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표1. RCEP 서명국과 한국과의 FTA 협정(발효,서명,타결) 개수>

협정 수	1개	2개	3개
국가명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비고		필리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개별 FTA 협상 중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APTA는 차치하고, FTA만 비교했을 때 한국의 입장에서 새롭게 FTA가 체결된 국가는 일본뿐이다. 나머지 국가와는 이미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심지어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와는 이미 2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다.

이는 한국의 관점에서만 정리한 것일 뿐, 한국을 제외한 RCEP 국가 간 체결된 FTA(ATIGA, 중-아세안 FTA 등)와, 또한 이들 국가로부터 제3국으로 수출 될 때 제3국과의 FTA(CPTPP 등)까지 고려하게 되면 원산지 규정은 그야말로 열기설기 설키게 된다.

스파게티 볼 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자세

일부 예외는 있으나, 우리는 지금까지의 FTA를 활용 할 때 양자 간(일대일, 다대일) FTA의 관세혜택에 중점을 두고 FTA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FTA를 활용 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다.

첫째, 관세율 혜택이다. 과거에는 수입국의 MFN 세율과 단일 FTA의 양허 스케줄을 보고 FTA 활용 실익 여부를 판단해 왔다면, 이제는 RCEP을 포함한 복수의 FTA 양허 스케줄을 파악해야 한다. 균등철폐가 되는 품목이 있다면 현시점에서 혜택이 적은 FTA가 특정시점부터는 혜택이 더 커지는 세율 역전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MFN 세율과 복수의 FTA 양허 스케줄을 면밀히 비교하고 시기별로 적절한 FTA를 활용해야 한다.

둘째는 누적의 활용이다.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경우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에 많은 생산법인을 두고 있다. 여타 FTA와 동일하게 RCEP 협정에서는 원산지 판정 시 RCEP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한다.² 누적을 활용하면 결과적으로 최종 완제품의 역내 부가가치비율 상승 등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용이해진다. 이것이 RCEP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표2. 호주산 원재료를 투입하여 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판정 예시>

	원자재 조달	판정 FTA	원자재의 역내산 인정 여부
Case 1	호주 (한-호주 FTA 활용)	한-아세안 FTA	불인정
Case 2	호주 (RCEP 활용)	RCEP	인정

누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수출 시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물품을 수출하는 시점에서 RCEP 이외의 FTA를 활용하는 것이 관세혜택 측면에서는 더 나은 경우가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경우 관세혜택 향유와 누적 활용을 모두 할 수 있도록 1개 수출물품에 대한 2개 이상의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기관발급 제도를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한 서명국들의 원산지증명서 발행과 관련한 실무적 관행들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적의 활용 가능성은 저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최종 수출국을 고려한 공정의 설계이다. 한국과 RCEP 국가 간 연결공정을 수행하여 최종 제품을

² RCEP Article 3.4: Cumulation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다국적 제조기업의 경우, 최종 수출국과 최종 수입국 간 활용하고자 하는 FTA의 원산지 규정까지 고려하여 공정을 설계하여야 한다.

마치며

지역주의의 가속화와 더불어 RCEP, CPTPP와 같은 MEGA FTA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얼키고 설킨 원산지 규정의 전략적 활용 여부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이익도 달라질 것이다. 영겨있는 무언가를 온전히 풀어냈을 때의 쾌감처럼, 우리 기업들도 영겨있는 원산지 규정을 잘 파악하고 활용하여 경제적 쾌감을 달성하길 바란다. 필요한 경우 그 과정에서 FTA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이를 풀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몽골, APTA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몽골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와 일부 품목에 대해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APTA란

-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 확대를 통해 회원국의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1976년 체결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장 오래된 지역무역협정이다.
- 현재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6개국으로,
- 3차에 걸친 특혜관세 협상을 통해 총 4,270개 품목에 대해 평균 26.8%의 특혜폭을 양허하였으며, 회원국간 상품 관세 인하 협정으로 시작했으며, 2009년부터 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체결로 분야가 확대되었다.



홍정화 관세사
jhhong@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검역/요건
- 품목분류

적용방법

□ 2021년 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양허 대상 품목*에 대하여 몽골과 상호 APTA 협정관세가 적용된다.

*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대통령령) 별표 3의가 및 3의 나

* 몽골로 수출되는 물품: APTA 몽골 양허표

□ 양허폭

- 한국에서 수출하는 건설중장비(굴착기), 자동차(디젤 수송용), 통조림(수산물) 등에 대해 몽골의 관세가 인하되고, 몽골산 의류, 광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인하된 APTA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 한국: 전체 품목의 28%인 2,797개, 평균 33.4% 관세 인하
- 몽골: 전체 품목의 6.5%인 366개, 평균 24.2% 관세 인하

몽골의 APTA 가입의 의의

몽골과 수교(1990. 3. 26.) 30주년인 올해 몽골의 APTA 가입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양국간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첫 번째 무역협정이 발효되는 것으로,

몽골은 유일하게 일본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APTA를 통해 몽골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몽골 등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 등을 협의하여 2021. 1. 1. 수입신고 분부터 몽골과 상호 APTA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APTA 추가 개선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품목을 확대하여 몽골 등 APTA 회원국의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Inside Vietnam

베트남의 관세 위반행위 처벌규정 128/2020/ND-CP 시행

베트남에서는 '관세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에 관한 시행령인 128/2020/ND-CP가 발표되어 2020년 10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의 분야별 위반사항에 따른 주요 벌칙 규정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통관 절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벌

1) 통관 절차의 기한 위반(제7조 1항)

기한 내에 다음의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VND 500,000 ~ VND 1,000,000 벌금

a) 기한 내에 세관 서류를 작성, 제출, 완료하거나 세관 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

(제 7 조의 3,4,5,6 항과 제 11 조 3 항 b 에 규정된 위반 사항은 제외)

b) 컨테이너 번호, 선적항, 수출 검문소 또는 수출품의 운송수단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 신고

c) 물품 인도 및 수령을 위해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는 운송수단의 재수출

d) 세관 신고 시 가격(official price)이 없거나, 실제지급가격 또는 가산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이후 과세가격에 대한 추가 정보 신고



박 성 현 관세사
sh.park@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FTA 컨설팅
- FTA 교육
- 관세환급
- 품목분류

- 2) 세관에 신고한 장소로 수출품을 이동하기 전에 세관신고를 하는 경우(제7조 3항 a)
: VND 2,000,000 ~ VND 5,000,000 벌금
- 3) 가공수출기업의 가공 활동과 관련된 기타 위반 (제7조 3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000,000 VND ~ 5,000,000 VND의 벌금
 - e) 가공 계약이 종료되거나 만료되는 때에 초과 자재, 스크랩, 불량품, 기계, 대여한 기계 및 장비, 가공된 제품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는 경우
 - f) 수출물품의 가공/제조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원재료, 기계 및 장비, 수출제품의 보관 장소 등) 추가 정보를 제 때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 g) 계약서 및 그 부속서를 제 때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 h) 세관 당국에 등록한 기한 내에 재수출 또는 재수입을 하지 않는 경우

2. 재고 정산 위반에 따른 행정 처벌

- 1) 면세 물품의 사용에 관산 정산보고의 기한 내(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제출(제7조 3항 b)
: VND 2,000,000 ~ VND 5,000,000의 벌금
- 2) 회계 장부, 회계 서류 또는 세관 신고서와 불일치하는 정산보고를 하고,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하였으나 정해진 기간(보고서 제출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정산보고를 수정하는 경우 (제11조 1항 b)
: VND 1,000,000 ~ VND 2,000,000의 벌금
(단,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였으나 세관이 정산 보고 검사 결정을 하기 전에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는 경우 부족 신고 금액 또는 과다 면세·환급·취소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 3) 회계 장부, 회계 서류 또는 세관 신고서와 불일치하는 정산보고를 한 경우(제11조 2항 c)
: VND 2,000,000 ~ VND 4,000,000 의 벌금 부과 (단, 상기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3. HS CODE 오신고에 따른 행정처벌

- 1) HS CODE를 잘못 신고 하였으나 과세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제8조 1항b)
: VND 1,000,000 ~ VND 2,000,000 벌금
- 2) HS CODE를 잘못 신고하여 납부세액의 부족 또는 면세·환급·취소금액의 과다가 발생하고, 납세자가 이러한 오류를 인지하는 경우(제9조 1항, 2항)
: 부족 신고 세액 또는 과다 면세·환급·취소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
- 3) 재무부 또는 세관이 물품의 코드를 안내한 물품의 HS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제9조 2항, 3항, 제14조1항 b)
: 탈세액의 1~3배에 해당하는 벌금

4. 수입 허가 및 요건 위반에 따른 행정처벌

수입 허가 대상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요건 대상이나 요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 18 조 1 항)
: VND 2,000,000 ~ VND 50,000,000 의 벌금

※ 본 내용은 베트남 현지 배포 자료를 근거로 신한관세법인이 구성, 재정리한 것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 베트남 소식 관련 상세 문의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베트남관세법인

박은실 법인장: +84-(0)24-7300-8630 [VN], +82-(0)70-5222-7280(KR) / espark@shcs.kr, scv@shcs.kr

신한관세법인

최대규 이 사: +82-(0)2-3448-1181 [KR] / dkchoi@shcs.kr

박성현 관세사: +82-(0)2-3448-1181 [KR] / sh.park@shcs.kr



관세무역 관련 법령변경 소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 정부는 '20.10.27(화)에 개최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1.3일 시행)을 의결하였습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6.4일)」 중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 주 내용은 외국환업무의 신속한 등록을 위해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가 등록신청 전에 등록 요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 지원 관세사

jwna@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FTA 컨설팅
- 기업심사
- 품목분류

주요 개정 내용

<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절차 >

-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규모·재무구조, 전산설비, 외국환 업무전문인력 등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신청
- ② 등록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은행장에게 등록신청을 한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
-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등록증 발급

-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기 이전이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요건 중 일부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 사전검토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히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분할·합병으로 신설법인이 외국환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 법인 설립 전이라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 외국환업무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외환거래 고객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 개정 사항 (신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 ③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2항의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3.>

④ 제3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을 적은 요청서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1. 3.>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사전검토를 요청한 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요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로 사전검토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3.>



관세 관련 심판사례

수입항에서 발생한 체선료의 과세쟁점

개요

2020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5개 발전사의 연간 1천억원에 가까운 수입항 체선료가 도마에 올랐다. 수입항 체선료는 수입물품을 수입국 항구에서 제때 하역하지 못해 지급하는 것으로 용선계약을 하는 정유업체 및 발전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그렇다면 수입항까지의 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하나, 수입항 도착한 후의 운임은 과세가격에서 공제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법상 “수입항 체선료”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실무상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판결을 소개한다.



강 가 람 관세사
grkang@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FTA 컨설팅
- 기업심사
- 품목분류

사실관계 및 쟁점

원고는 중국으로부터 유연탄을 수입하면서 수입항에서 선장의 하역준비완료 통지 후의 체선료를 선주에게 지급하였고, 해당 체선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관련 고시에서 수입항 도착의 기준을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선하역준비 완료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실질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다.

결정요지

이 사건의 체선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한 미용" (가산요소)에 포함되며, 다음을 근거로 한다.

- ① 원고는 수입항 전용부두를 소유하고 있는데, 선박이 접안이 어려울 경우 수입항 항계 밖에서 검역을 완료한 후 하역준비완료통지를 하는 점
- ② 이 사건의 하역준비완료 통지를 하는 지점은 전용부두에서 약 37km 떨어진 지점으로 그곳에서 전용부두 접안까지 약 3일이 걸리는 점
- ③ 수입항 도착을 전제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볼 것인 점
- ④ 이 사건과 같이 접안하역의 경우 운송인은 운송물을 실제 양륙이 이루어지는 부두까지 운송하여 화주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는 점

시사점

본 사건 이후 "본선하역준비 완료시점"의 법적 해석은 상기 판결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CIF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수입항 체선료에 대해 비과세 논지를 유지하고 있고, 항해운송계약 측면에서 체선료는 수입항 도착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인 점을 고려하면 "수입항 체선료"에 대한 과세쟁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광주지방법원 2009구합4050 참고)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